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649
----------	-----

제출년월일 : 2001. 1. 2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에서 위임한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차등 적용함(안 제2조)

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 처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3조의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와 별지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한다.

②과태료처분대상자는 10일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2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별지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지적과
입 안 자	실·과장	지 적 과 장
	직위·성명	남 상 균
	담 당	토지관리담당
	직위·성명	조 중 하
	담 당 자	이학현
	성명·전화	(4843)

[법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안 제2조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조항	부 과 기 준	한도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 제33조의2 제2항제1호	·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2. 법 제21조의18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 (단,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삼입하지 아니함)	법 제33조의2 제2항제6호		
가. 1월초과 1년 6월이내		· 토지가격의 4/100	50만원
나. 1년6월초과 2년이내		· 토지가격의 8/100	100만원
나. 2년초과		·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3. 법 제21조의18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6호	·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4. 법 제21조의18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6호	·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파 주 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 행 년 월 일 . .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 · 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파주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장 소	상호(명칭)		업 종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반사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1부

파 주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시 세)

과태료 납부통지서 (수납기관용)				년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남 부	성 명			
	주 소			
의무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파주시 금고			
위의 과태료는 국토이용관리 법 제 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시 세)

과태료 납부통지서 (세입관서용)				년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남 부	성 명			
	주 소			
의무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파주시 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파 주 시 장		

(시 세)

과태료 납부통지서 (처분부서용)				년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남 부	성 명			
	주 소			
의무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파주시 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파 주 시 장		

(시 세)

과태료 납부통지서 (납 부 자 용)				년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남 부	성 명			
	주 소			
의무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금 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파주시 금고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		
				취급자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파주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

주 소 :

성 명 : 귀하

과태료납부 통 지 번 호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파 주 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통지

아래의 과태료처분 원인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과태료 원인사실			
	법 적 근 거			
의 건 진 술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기 한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
기 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파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파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진술서1부

파 주 시 장

파 주 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처분 및 불 복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끝.

파 주 시 장(인)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납부의무자			금액	과태료처분 통지일	장 촉 독	일 부 발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성	명	주 소					당 초	독 축		이의제기일	이의제기 범원통보일